

※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 펌뱅크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

2019. 8.27 제정  
2020. 4.24 개정  
2020. 12.3 개정  
2022. 9.23 개정  
**2023. 2.28 개정**

**제1조(목적)**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펌뱅크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,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① “펌뱅크”이란 기업체(Firm)가 원하는 서비스 종류, 전송방법, 형태, 수수료, 자금예치 등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, 상호 전산시스템을 VAN망을 통하여 직접 연결(전용회선)하여 기업체의 금융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② “이용기관”이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펌뱅크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.

③ “납부자”란 자동이체를 통해 각종 요금을 납부하거나 자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자로서, 이용기관의 고객을 말합니다.

④ “자동이체”란 이용기관의 출금청구 또는 납부자의 송금요청에 따라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하며,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.

1. 자동납부 : 이용기관의 출금청구에 따라 납부자의 계좌에서 각종 요금을 출금하여 해당 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

2. 자동송금 : 납부자와 참가기관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등록된 납부자의 출금계좌에서 지정 수취계좌로 주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

**제3조(자동이체 신청)**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1. 상호저축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(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, 전화 녹취, 음성응답시스템(ARS) 포함. 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<개정 2020.12.3.>

2.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 전달(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하는 방법. 단,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인 이용기관이 합니다.

**제4조(최초 개시일)**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,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개시일로 합니다.

**제5조(자동이체 납기일)**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납기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출금대체 납부합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나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.

**제6조(과실책임)** ① 상호저축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.

② 납부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종합통장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**제7조(출금우선순위)** 지정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. 다만,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**제8조(출금기준 및 이의제기)**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상호저축은행 출금 시점의 예금 잔액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,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.

**제9조(자동이체 해지)** ① 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요청 시 동일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 여러 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.

**제10조(정보제공)** 납부자는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(거래상호저축은행명, 계좌번호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 등)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,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**제11조(상호저축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)** 상호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**제12조(이용기관에 신청 시 약관 적용)** 제3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**제13조(이용수수료)**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수수료는 상호저축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내에서 상호간 계약에 따라 결정합니다.

**제14조(계좌이동서비스)** ① 상호저축은행 펌뱅킹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.

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 출금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 <개정 2020.4.24., **2023.2.28.**>

③ 납부자가 영업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. <개정 2020.4.24.>

④ 납부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. <개정 2020.4.24>

⑤ 제3조에 따라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출금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'자동 이체 통합관리시스템'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.

**제15조(약관의 변경)**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. <개정 2022.9.23>

② <삭제 2022.9.23>

③ <삭제 2022.9.23>

④ <삭제 2022.9.23>

⑤ <삭제 2022.9.23>

**제16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**

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
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, 전자금융감독규정,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.